

의안번호	제886호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김종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#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종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의자 : 김종필, 이상식, 김현문,  
박지현, 이동우, 이상정,  
이정범

## 1. 제안이유

- 우리 역사의 발전 전반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여성들의 문화·가치관 등 여성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등은 미흡한 실정임. 이에 따라, 충북 지역 여성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해, 충북 여성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여성사 연구 사업 및 위탁 관련 사항 (안 제3조)
- 여성사 연구 지원 규정(안 제4조)
- 여성사 교육 및 홍보 관련 지원 사항(안 제5조)

## 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비용추계 : 붙임
- 협의 :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
- 조례안 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사 연구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지역 여성의 역사·생애·문화·사상 등의 연구를 말한다.
2. “연구기관”이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 여성사 연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여성사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자료의 전시·보존·공유 사업
2. 여성사 편찬, 영상 제작 관련 사업
3. 여성사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·보존·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도내 연구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도 여성사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
2.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
3.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
4.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·보존·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연구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 및 홍보 지원) 도지사는 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37조(양성평등 문화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, 방송, 잡지,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, 편견,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,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, 편견,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,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1조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우리 역사의 발전 전반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여성들의 문화·가치관 등 여성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등은 미흡한 실정
- 충북 지역여성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지원해 충북 여성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등 발생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지원사업 등) 및 안 제4조(연구지원 등)
- 안 제5조(교육 및 홍보 지원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 ~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, 2025년 추진사업 기준으로 여성사 연구지원을 위한 사업비용 추계

### 나. 추계 결과

- 연간 37,860천원, 향후 5년간 185,860천원 소요
  - 여성독립운동가(홍보리플릿, 홍보물품, 문화해설 강사료 등) 8,670천원
  - 지역 여성사 연구 등 29,190천원

###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(043-220-3910)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37,860	37,000	37,000	37,000	37,000	185,860
여성독립운동가	8,670	7,000	7,000	7,000	7,000	36,670
지역 여성사 연구 등	29,19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49,190
재원 조달	37,860	37,000	37,000	37,000	37,000	185,86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37,860	37,000	37,000	37,000	185,860
	지방세	37,860	37,000	37,000	37,000	185,86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구.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만자, 예비비 등)						